

[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.07.16.(목) 이후 발행 분에 한합니다.]

당첨자 발표	자격확인 서류검수(5일간)	정당계약일
2026년 8월 4일 화요일	2026년 8월 7일 금요일 ~ 2026년 8월 11일 화요일(10:00 ~ 17:00)	2026년 8월 18일 화요일 ~ 2026년 8월 20일 목요일(10:00 ~ 16:00)

■ 당첨자 자격확인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/ 서약서	본인	·건분주택 비치, 개인정보수집안내(신청자용)
	○		신분증	본인	·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발급구분 : 본인발급, 용도 :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·전자민원청구용 인감증명서(온라인발급)는 제출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·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발급)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발급)	본인	·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	본인	·기록대조일 : 시작일 [본인 생년월일] - 종료일 [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16.]로 발급 ·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'예'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여부 '예'로 설정하여 발급 ·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"전체발급"으로 발급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	본인	·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·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, 재직증명서 ·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명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※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한 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 모 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
	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	·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체류 여부 확인 ·기록대조일 : 시작일 [본인 생년월일] - 종료일 [입주자모집공고일 2026.07.16.]로 발급 ·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'예'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여부 '예'로 설정하여 발급 ※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본인 및 세대원	·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	○		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	본인	·건분주택 비치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·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"전체발급"으로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 피부양 직계비속	·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됨) ·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※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, "상세증명서"로 발급 ·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혼인 여부 확인)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·공급 신청자가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(상세)	본인 또는 배우자	·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·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·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"전부 공개"로 발급)
		○	임신증명 출산이행 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임신의 경우(건분주택에 비치)
		○	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·출산특례로 당첨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작성 (건분주택에 비치)
	○		위임장	청약자	·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제3자 대리인 신청시		○	인감증명서	청약자	·용도 :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: 위임용(청약자 본인 발급용)) ·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·전자민원청구용 인감증명서(온라인발급)는 제출 불가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·인감증명서와 대조, 위임장 날인
		○	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·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
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·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민원회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·"소형·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·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○	기타 소명서류	해당주택	·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